#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 8-776 제안연월일 : 2021. 12. 1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어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(안 제1조)

3. 개정규칙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1

4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5. 현행규칙 : 붙임2

6. 관계법령 : 붙임3 (발췌문)

#### [붙임 1]

##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"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의회(이하 "의회"라한다)에"를 "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(이하"의회 "라한다)에"로 한다.
- 제2조제3항 중 "의거"를 "따라"로 한다.
- 제4조 중 "각호의"를 "각 호의"하고 "소개 의원과"를 "소개의원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2개이상 또는 2개기관"을 "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"으로 한다.
- 제5조제1항 중 "제4조제3호의 규정에"를 "제4조제3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"를 "제1항에"로, "제6조제3항 규정에"를 "제6조제3항 에"로 한다.
- 제6조제4항 중 "회부일로 부터"를 "회부일로부터"로 하고, "10일이내에"를 "10일 이내에"로 한다.
- 제8조제1항 중 "있는자로 부터"를 "있는 자로부터"로 한다.
- 제9조제4항 중 "심사 · 의결을"을 "심사 · 의결을"로 한다.
- 제10조 중 "각호의"를 "각 호의"로 한다.
- 제13조 중 "각호의"를 "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제11조 제2항 제2 호에"를 "제11조제2항제2호에"로 한다.
- 제16조 중 "제9조의 규정에"를 "제9조에"로 하고, "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"를 "안산시의회 회의 규칙"으로 한다.
- 제17조 중 "안산시 의회위원회 조례와 안산시 의회 회의규칙을"을 "안산시의회 교 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	개	정	안	
<u>의 규정에 의하여 (</u> <u>다) 에</u> 제출되는 청	은 <u>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</u> 안산시 의회(이하 "의회"라 한 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에 따라 9	안산시의회	(이하 "의	회"라 한다) 	
	① ~ ② (생 략) 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 <u>거</u> 작성, 첨부하여야 한다.				② (현행과 : 	
호의 1에 해당될 다. 이 경우 그 사유 원인에게 통지하여다 1. ~ 2.(생 략)	<b>통지)</b> 의장은 청원이 다음 <u>각</u> 대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 유를 명시하여 <u>소개 의원과</u> 청 야 한다.	호의  1. ~ 2.	  (현행과 <sup>:</sup> - <u>2개 이</u>	  같음)	<u>소개</u> 9	 의원과 -
4. (생 략)		4. (현행]	과 같음)			
의하여 접수되지 아 의원을 경유하여 이 ②의장은 제1항의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다.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 또는 제6조2	형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 신청을 할 수 있다.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 제3항 규정에 의한 그 특별위 리 협의하여야 한다.	2 <u>2</u>	지1항에 -			  
제6조(청원서 회부와	<b>그 심사)</b> ① ~ ③ (생 략)	<b>제6조(청원</b> 같음)	서 회부와	그 심사)	① ~ ③	(현행과
없는 한 폐회중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기 에 심사를 마치지 :	<u>회부일로 부터</u> 특별한 사유가 기간을 제외하고 <u>10일이내에</u> 네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 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	 	 	 	<u>10</u> 2	<u>일 이내에</u> 
	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 는 청원인, 이해관계인 및 학		인등 진술) 			

현 행	개 정 안			
식과 경험이 <u>있는자로 부터</u> 진술을 들을 수 있	<u>있는 자로부터</u>			
다.	<b>-</b> 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
<b>제9조(제척과 회피)</b> ① ~ ③ (생 략)	<b>제9조(제척과 회피)</b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	
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	<b>4</b>			
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<u>심사 ·의결을</u> 회피	<u>심사·</u> 의결을			
할 수 있다.				
<b>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</b> 위원회	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			
는 청원이 다음 <u>각호의</u>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	<u>각 호의</u>			
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	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
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의장은 다음 <u>각호의</u>	제13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<u>각 호의</u>			
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5. <u>제11조 제2항 제2호에</u>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 의에서 처리되었을 때	5. <u>세11소세2항세2호에</u>			
<b>제16조(징계)</b>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<u>제9</u>				
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				
를 외피아시 아니만 때에는 시방사시법 및 <u>안산</u>   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	시의하 하의 구치에			
있다.	<u> </u>			
제17조(준용규정)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				
	<u>안산시의회</u>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			
<u> </u>	<u>교업단체 및 위전의 무용과 문용에 된인 모네고</u>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			
۵.	<u></u>			